20 페이지

이 부분에 아래 노란부분 내용 추가

제1절 소장 작성례

소 장

원 고 : 전희정(590624-2030403)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8, 109동 807호(반포동, 한양아파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자우편주소 :

피 고 : 1. 임주경(620803-2131425)
서울 서초구 반포로대로 155(잠원동)
2. 홍양수(600214-1213423)
서울 강남구 역삼로 7길 17(역삼동)

대여금 청구의 소

소 가 200,000,000 원
인지대 855,000 원
200,000,000 원 ㅌ 40/10,000 + 55,000 원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교재 23 페이지

사례 1 **피고가 복수인 경우**

피고가 복수인 경우 청구취지의 기재형식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피고 갑, 을은 원고에게 ① 각 ② 연대하여 ③ 합동하여 ④ 공동하여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가 제기된 경우 두 개의 청구가 주관적으로 병합된 것인데, ①은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므로 합산법칙이 적용되어 소송목적의 값은 2억 원이다. 이에 비하여 ②, ③, ④의 경우는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므로 흡수법칙이 적용되어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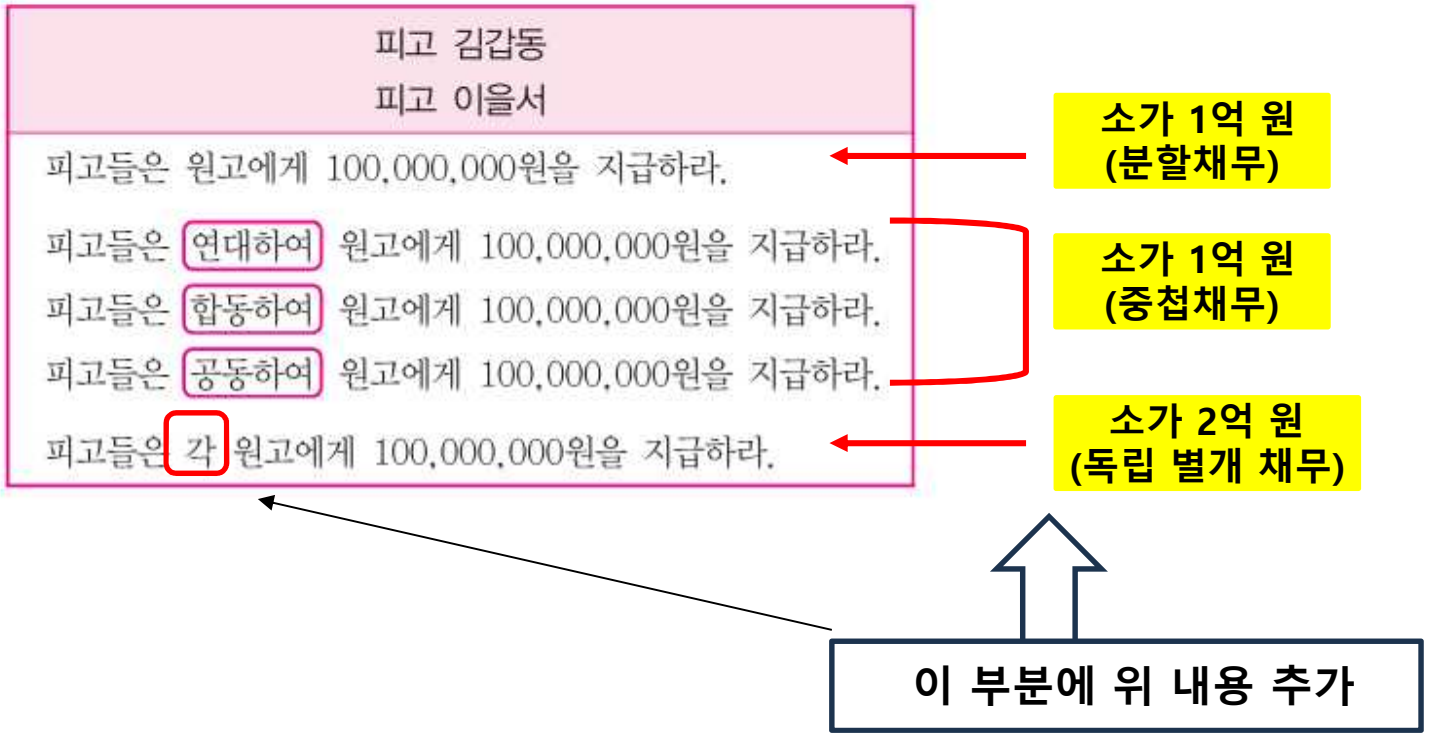

교재 26 페이지

가. 기본형

*** 기재례 1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7.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완제일[illegible]"라는 기재가 틀린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다 갚는 날까지"라 표현하는 것이 보다 [illegible]절하다.2)

이 부분에 아래 노란부분 내용 추가하고 위와 같이 밑줄 추가

사법연수원 교재에서는 ...이에 대한...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실제 판결문 기재례는 ....이에 대하여 " 라고 기재하고 있다. 본 교재에서는 이 부분 용어 사용에 있어서 구분 없이 혼용하기로 한다.

교재 27 페이지

나. 응용형

1) 이율의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4.2.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5.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참고** : 상대방에게 여러 개의 채권(대여금, 물품대금, 정산금, 양수금 등)을 청구하고 각 채권 별로 이자 등의 기산일이 다른 경우 혹은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상대방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2) 1인의 [illegible] 하여금 여러 사람의 원고에게 동일 또는 상이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때

이 부분에 아래 노란부분 내용 추가하고 위와 같이 밑줄 추가

▶ "그중"과 "이 중"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 찾아 보면, 그중과 이 중은 같은 의미이나 그중은 붙여쓰고 이 중은 띄어쓴다고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자료나 실제 판결문 작성례에서는 대부분 "그중"으로 기재하고 있고 그중을 붙여 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하는 바, 이하 본 교재에서는 "그중"으로 기재하되 이를 붙여서 기재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교재 29 페이지

2)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가) 중첩관계의 예

① 불가분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의 반환채무 등

② 연대채무
연대채무자의 채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 사용대차·임대차에 있어서 공동차주의 채무,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 등

③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 등

④ 합동채무
여러 사람의 어음·수표채무자의 채무

⑤ 기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

이 부분에 아래 노란부분 내용 추가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

나) 중첩관계의 표시

교재 32 페이지

참고 사례 연대보증 후 주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기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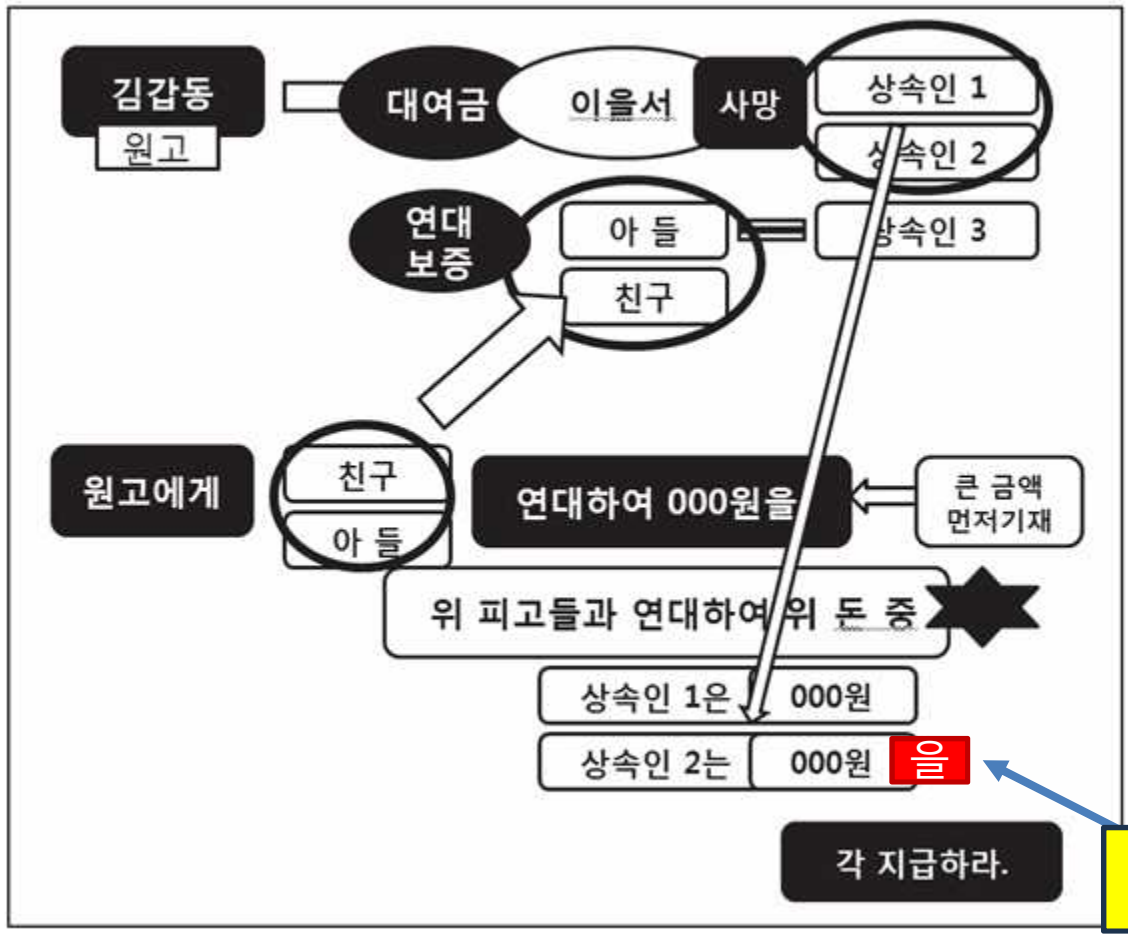

이 부분에 추가

교재 32 페이지

피고 측이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청구취지 기재례

1. 피고는 망 소외 이을남(650210-1017542)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부분 아래 판례 내용 추가

※ 참고판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4335, 2022다4342 판결**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교재 33 페이지

라.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사례 1 건물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월차임 공제가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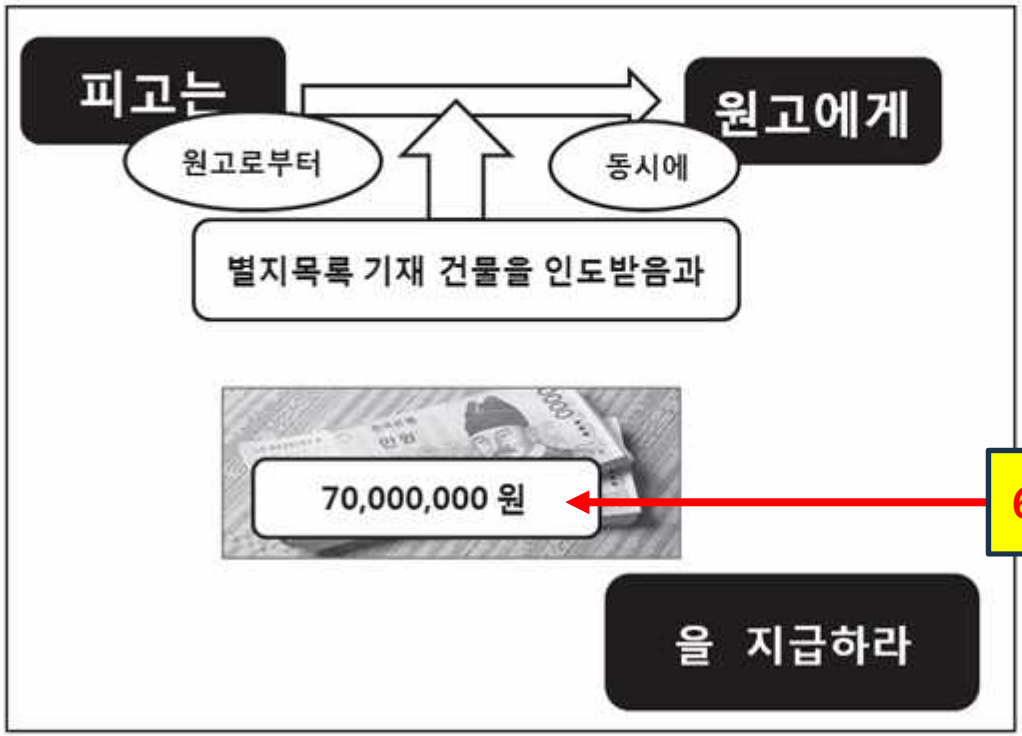

60,000,000 원....으로 수정

교재33 페이지

사례 2 건물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월차임 연체한 날부터 건물 인도 시까지 임을 공제한 잔액을 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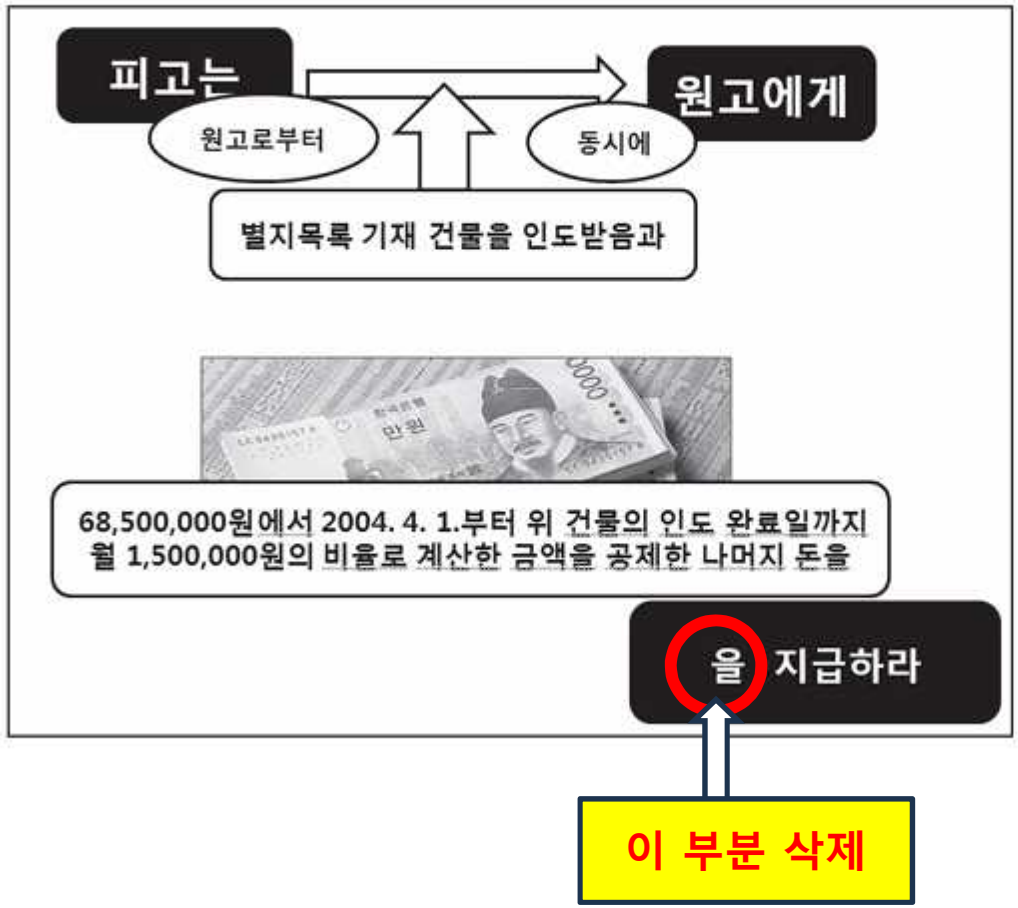

교재35 페이지

마. 장래 이행(선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도로점용 사용으로 인한 장래의 부당이득 청구

도로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함에 있어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 외에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까지 미리 청구할 경우 청구취지는 "~부터 피고의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까지 월 금 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기재한다.

Check Point

✣ 기발생분과 장래발생분을 나누어 청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7.10.8.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상의 도로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소가 : 기발생분 + 장래1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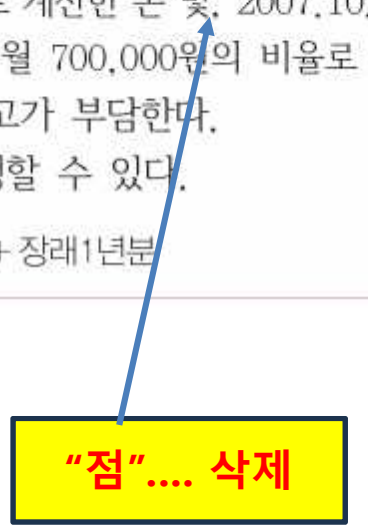

교재 36 페이지

사례 1

◎ 갑은 2013.10.11. 을에게 금 9천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2년 후인 2015.10.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을의 아들 병과 친구 정이 위 대여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여금의 이자는 매월 1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그 후 을, 병, 정은 위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므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을은 2015.5.10. 이후 전혀 원리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다른 소멸시효 사유도 부존재한다고 가정하며, 2018.12.1. 기준으로 판단할 것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따라서 2015.10.10.까지의 이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2015.10.11.부터의 지연이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사.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와 소송촉진 등에 관 례법 적용 여부 – 대법원 2002.10.11. 2002다39807 판결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 지연이자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 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 손해금의 지급을 구

이 부분 삭제

교재 41 페이지

4) 위 사례에서 주채무자 이공방이 사망한 경우 기재례 추가

… 앞 부분은 위와 동일 …

그러나 그 후 주채무자인 망 이공방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4.11.26.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피고 이태원과 이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고시원은 망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나머지 제1, 2차 대금 130,000,000원 및 그 중 나머지 제1차 대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12.28.부터, 제2차 대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1.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피고 이태원, 이차원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고시원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즉, 각 65,000,000원 및 그중 각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12.28.부터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illegible]가 있습니다.

나. 계약금반환 청구사건

1) 기본사례[8)]

【기본사례】 원고(매수

원고는 피고로부터 2[illegible]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이 부분 삭제

교재 42 페이지

다. 정산금 청구사건(청구원인 기재례)

1. 2014.8.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그간의 자전거 부품외상 미수금을 7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이을남이 2014.12.31.까지 위 정산금을 지급하되, 연체할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월 1% 비율의 지연손
2. 그러므로 피고 대하여 2015.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아래 내용으로 교체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오던 중 2005.12.31. 그 미수 외상대금을 금 1억 원으로 정산을 하였고. 피고는 2006.2.1.까지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월 1%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재 44 페이지

바. 구상금

1) 청구원인 기재례

【청구원인】 –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사실
– 대위변제한 사실

1. 원고는 2017.1.2. 피고가 병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8.1.2.로 하여 차용하는 데 연대보증을 서준 바 있습니다.
2. 그 후 병의 청구로 갑이 2018.2.2.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36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3,600,000원(30,000,000원 +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공동면책일) 당일인 2018.2.2.부터(민법 제425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자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로 수정

교재45 페이지

원고는 2002.1.1.(계약일자)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트 ○동 ○호(임차목적물)를 임대보증금 5천만 원(임대보증금액), 임대기간 2년간(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종료사유).

*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또는 해지원인 등을 밝혀야 함
* 주요서증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사례 2

1. 원고는 2013.1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기간 2013.11.9.부터 2015.1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 후 위 임대차는 2015.1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일 임차인이 그 후 임차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었다면 인도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도 구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을..... 로 수정

교재45 페이지

* 주요서증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사례 2

1. 원고는 2013.1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기간 2013.11.9.부터 2015.1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 후 위 임대차는 2015.1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일 임차인이 그 후 임차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었다면 인도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도 구할 수 있다.

명방법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

이 부분 아래 판례 내용 추가

※ 참고판례

*****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 불가분채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참조).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7다205703 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교재 47 페이지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4.5.20. 피고 이민준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1%(매월 19일 지급) 변제기 2015.5.19.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박서연은 위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이민중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2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월 1%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하 생략 …

이 부분에 아래 노란부분 내용 추가

그 후 피고 이미준은 2014.5.19. 위 차용금 중 15,000,000원과 위 대여금에 대한 그때까지 의 약정이자만 변제하고 나머지 135,000,000원 및 그 이후의 지연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재 48 페이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4.5.20. 피고 이민준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1%(매월 19일 지급) 변제기 2015.5.19.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박서연은 위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이민중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2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월 1%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하 생략 …

이 부분에 아래 노란부분 내용 추가

그 후 피고 이미준은 2014.5.19. 위 차용금 중 15,000,000원과 위 대여금에 대한 그때까지 의 약정이자만 변제하고 나머지 135,000,000원 및 그 이후의 지연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재 49 페이지

아래 내용을 읽고 김을동의 권리행사에 가장 유리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김을동[600212-12131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8, 109동 807호(반포동, 한양아파트), 전화번호 : 02-872-9079, 전자우편 : kkd@lala.net]은 송일남[611221-123123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123, 5동 315호(장항동, 호수아파트)]에게 월 1.5푼의 이자로 변제기 2015년 9월 29일로 하여 대여하는 사업이 부진함에 의하여 김갑동의 수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응시자는 2015.10.28. 자로 김갑동에게 유리한 소장을 작성하되, 소가 및 인지는 표지 상단 우측에 그 내역과 함께 표시하시오.

※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인)으로 표시할 것

김갑동..... 으로 수정



교재 50 페이지

» 답안례

소 장

*** 소 가 20,000,000원
*** 인지대 95,000원

원 고 김을동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8, 109동 807호(반포동, 한양아파트)
(전화번호 : 02-872-9079)
(전자우편 : kkd@lala.net)

김갑동(600212-1213145)....으로 수정

교재 51 페이지

1. 위 증명방법 2통
2. 영수필확인서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4.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5. 소장부본 1통

2015. 9. 28.

원고 김갑동 (인)

10. 28....로 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교재58 페이지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2통
2. 영수필확인서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4.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5. 소장부본 1통

2019. 9. 21.

원고 김상훈 (인)

9. 20....로 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교재 59 페이지

(2013.9.28. 기준으로 소장을 작성하되 소가와 첨부인지대를 계산하여 소장 상단 우측여백에 표기하고 날인은 (인)으로, 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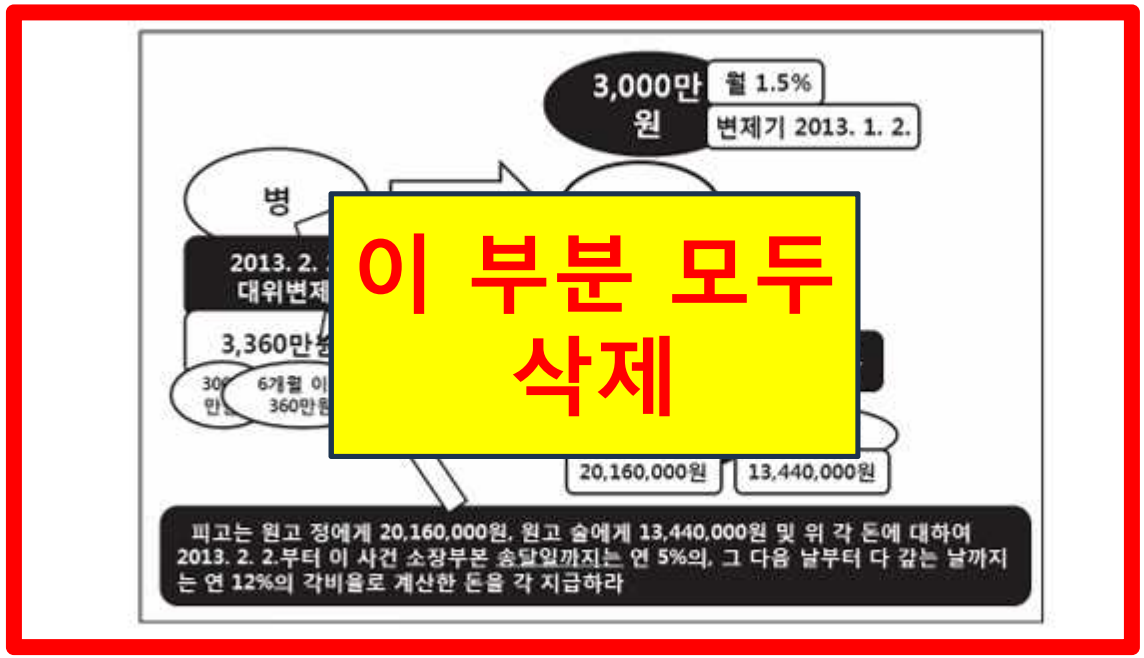

교재 63 페이지

◎ 이을서는 적금을 찾아서 갚겠다던 2015.6.17.이 도달하자 그때까지의 3달치 이자와 원금 5천만 원을 김갑동에게 지급한 뒤 나머지 1억 5천만 원과 그 이후의 이자를 현재까지도 한푼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갚겠다고 미루기만 하고 있음. 그리고 박순남은 이을서는 부부 불화가 심화되어 현재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별거 중이며 이혼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음.

김갑동의 위 진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고, 2015.10.7.자로 김갑동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시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되 그 밖에 자연적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고 장황하게 기재하지 말며, 날인은 ㉦으로 표시하시오. 또한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첩부인지대 및 송달료를 기재하시오(소가와 인지를 계산한 내역도 기재할 것).

첨부할 인지대....로 수정

교재 64 페이지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



» 답안례

소 장

*** 소 가 150,000,000원
*** 인지대 655,000원
내역) 150,000,000원×40/10,000＋55,000원

교재 70 페이지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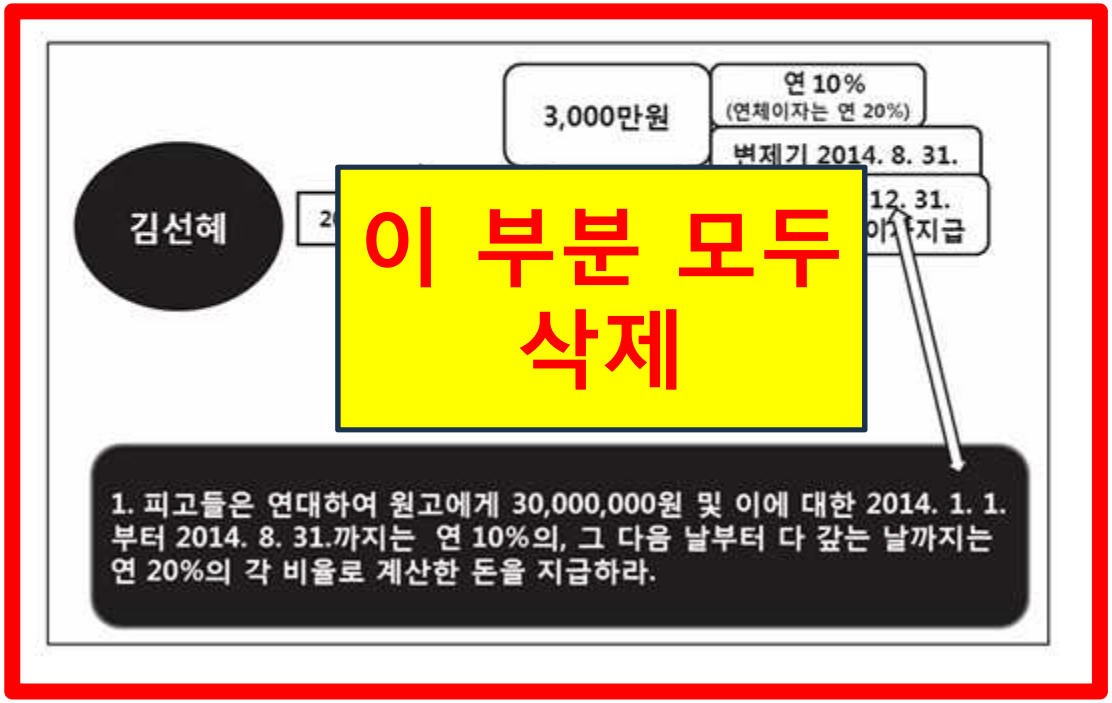

교재 78 페이지

피 고 성명농(671230-1234567)
청주시 오송로 1 제이컴퍼니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4.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중....으로 수정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20.4.27. 피고와 사이에 KF94 마스크 10만 장을 대금 90,000,000원, 물품의 인도는 2020.5.7.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교재 78 페이지

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 해제의 취지를 밝히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0.5.18. '알겠다'고 짧게 답장을 보내와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물품공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습니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금을 받은 2020.4.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또한 위약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수정

교 79-81 페이지

79-81 페이지 전체적인 강평 내용은 80 페이지의 아래 내용만 남기고 모두 삭제

▶ 계약금 반환의 경우 지연이자 기산일이 금원을 지급받은 날 당일이 되며, 계약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상인이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상행위이므로 그 물품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기에(대판 2003.10.23, 2001다75295 등 참조)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6%로 구하였음.

▶ 위약금의 경우 지급기한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사례에는 계약금반환만 청구한 적이 있을 뿐이므로, 아래 참고 판례처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처리해서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상 연 12%만 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음

▶ **참고판례**

1) 대법원 2021.5.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1. 선고 2020가합531838 판결 매매대금반환

…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공급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이전에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10.31.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교재 83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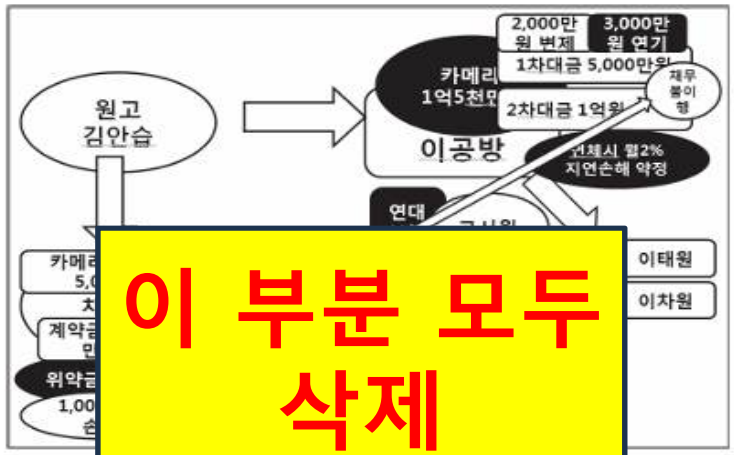

1. 원고에게,

가. 피고 고시원은 13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12.28.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이태원, 이차원은 피고 고시원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각 65,000,000원 및 그 중 각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12.28.부터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1.21.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답안례

소 장

*** 소 가 130,000,000원

교재 84 페이지

3. 그러므로 피고 고시원은 망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나머지 제1, 2차 대금 130,000,000원 및 그 중 나머지 제1차 대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12.28.부터, 제2차 대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1.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피고 이태원, 이차원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고시원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 즉, 각 65,000,000원 및 그중 각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12.28.부터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돈....으로 수정

삭제

교재 91 페이지



» 답안례

소 장

*** 소 가 66,000,000원
내역) 1) 임차보증금 42,000,000원
2) 원상회복비 4,000,000원
3) 손해배상 20,000,000원
*** 인지대 302,000원
내역) 66,000,000원×45/10,000+5,000

교재 92 페이지

번호삭제

3....으로 번호수정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6.7.5. 소외 이경미가 운영하는 커피숍 '카페로'를 2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위 이경미에게서 인수하고, 같은 날 위 '카페로'가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차기간 2016.7.19.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리고 원고는 위 상가를 인도받은 다음 피고의 동의를 얻어 2016.7.25. 400만 원의 천장누수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3. 그 후 원고는 2018.5월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2018.7.1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였으며, 원고의 연체차임은 800만 원(2018.4월과 5월)에 이릅니다.

4. 한편,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고 피고를 설득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광고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2018.7.5. 위 상가를 새로이 임차하려는 소외 박은경과 사이에 권리금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8.7.19.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갑자기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위 상가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무산되어 원고는 권리금 2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위 2,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4천2백만 원(=5천만 원-800만 원)과 위 천장보수공사에 소요된 필요비 4,000,000원 및 권리금회수 손해금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7.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재 105 페이지

4. 마치며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박민성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을, 피고 최기동은 피고 박민성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10.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증

44,000,000원....으로 수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의 1-2 통지서 등
3. 갑 제3호증의 1-3 임대차목적물 인도관련 문자내역 등
4. 갑 제4호증 이행최고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2. 갑 제2호증의 1-2 통지서 등
3. 갑 제3호증의 1-2 임대차목적물 인도관련 문자내역 등
4. 갑 제4호증의 1-2 이행최고서 등 (박민성 관련)
5. 갑 제5호증의 1-2 이행최고서 등 (최기동 관련)

....으로 수정

교재106 페이지

*** 참고로 청구취지 1항은 아래와 같이 기재해도 좋을 것입니다.

1. 원고에게, 피고 박민성은 50,000,000원, 피고 최기동은 피고 박민성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10.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4,000,000원....으로 수정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민성은 5[illegible]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 [illegible]한 돈을,
나. 피고 최기동은 피고 박민성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0.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교재 109 페이지

○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첩부인지대를 계산 내역과 함께 기재하시오.
* 별첨 – 약속어음(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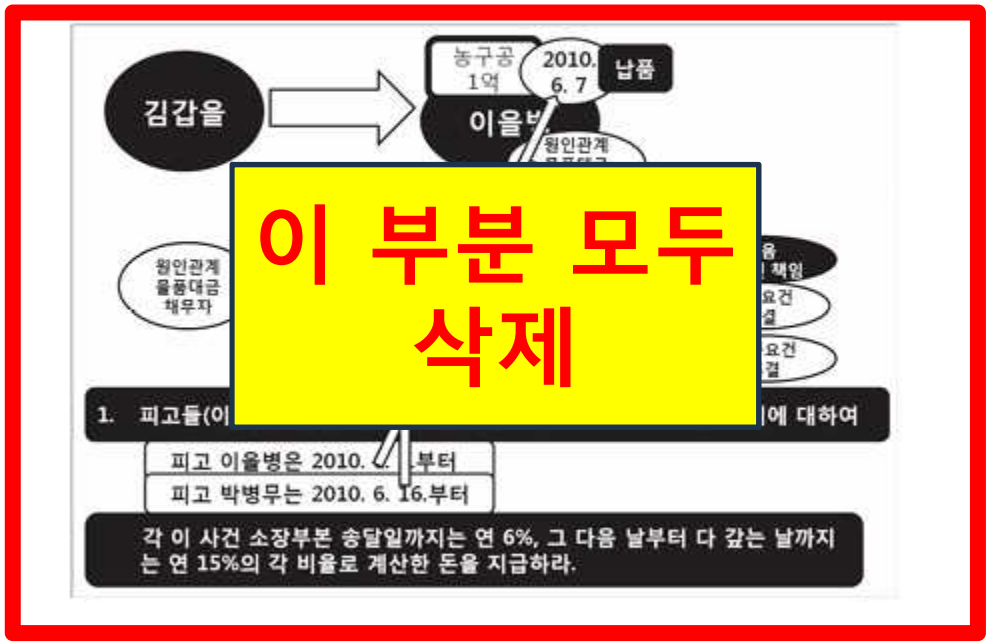

» 답안례

교재135 페이지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2 채권양도계약서, 차용증
2. 갑 제2호증의 1-3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우편배달증명서
3. 갑 제3호증의 1-3 가압류결정문, 송달증명원, 가압류취소결정문
4. 갑 제4호증 문자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2통
2. 영수필확인서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4.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5. 소장부본 1통

2023. 10. 14.

10. 20.....으로 수정

교재 139 페이지

과 공동하여 김갑동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갑동은 치료비 7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음. 그 후 2015.10.10. 위 이을서가 사망하였으며 유족으로는 그의 모친인 조성숙과 처인 윤혜진 아들 위 이정삼 및 딸 이남숙이 있음.

▶ 답안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정삼, 조성길은 합동하여 35,000,000원 및 위 피고들과 합동하여 위 돈 중 피고 윤혜진은 15,000,000원 피고 이남숙은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4.1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이정삼, 박기철은 공동하여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1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돈....으로 수정

2. 사례

1) 김일석은 2007.7.1. 주류도매상인 친구 이대수에게 영업자금조로 7,000만 원을 이자 월 1.5% (매월말일 지급), 변제기 2011.6.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이대수의 아들 이인석과 그

교재 150 페이지

번호 수정

다. 청구원인 기재례

1) 임차보증금 양도사례

1. 피고 주진무는 2008.12.5. 피고 김혜순으로부터 청구취지 1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09.1.1.부터 2010.12.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불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데, 현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0.8.1. 이후 월 차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원고는 2010.8.9. 피고 주진무로부터 피고 김혜순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을 양도받고, 채권양도인인 피고 주진무가 피고 김혜순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0.8.11. 도달하였습니다.
3. 그리고 위 임대차는 … 진무는 피고 김혜순에게 위 건물을 인도 …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 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

이 부분 모두 삭제

2) 물품대금 양도사례

1. 주유소를 운영하는 소외 박추병은 2008.3.1. 동대문 평화상가에서 의류도매상을 운영하는 피고 이하유에게, 5천만 원을 변제기 2008.4.30.로 정하여 빌려준 적이 있고, 원고는 2008.5.15. 위 박추병에게 5천만 원을 이자율은 월 1%로, 변제기는 2008.11.30.로 정하여 빌려 주었는데 위 박추병은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09.9.9. 원고에 대한 위 돈 5천만 원(2008.5.15.자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조로 자신이 피고 이하유로부터 받을 위 돈 5천만 원(2008.3.1.자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피고 이하유에게 자신이 이하유로부터 받아야 할 위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피고 이하유는 그 우편을 2009.9.11. 받아 보았습니다.
2. 그러므로 피고 이하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5.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관련 사례들

1)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사례

… 피고 손태수는 위 채권양도 전에 위 모자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손태수는 위 채권양도의 승낙 당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손태수는 변제로써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그러나 원고가 그 당시 위 변제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 손태수는 변제로

교재 151 페이지

3) 채권의 이중양도에 대한 판단 사례

… 김한종은 A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에 2004.1.26. 원고에게 다시 이를 양도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위 양도사실을 피고(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이 채권양도가 이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대항요건인 승낙이나 양도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한 쪽이 우선하므로, 원고가 비록 시기적으로 먼저 위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B에게 대항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4) 선행채권 양도에 관한 사례

위 부분 삭제

교재 153 페이지

153페이지 내용 모두 식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교체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가압류 집행만 이루어진 경우에, 압류·가압류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현실로 그 급부를 추심하는 것은 금지된다).

▶ 집행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나면. 제3채무자를 직접 상대하여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획득하므로, 집행채권자와 (본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 사이에 누가 원고적격을 가지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의 판례는 그 추심명령으로써 집행채무자가 원고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으나. 최근 대판(2025.10.23. 2021다252977)은 이를 변경하여 둘 다 원고적격을 가지되 한쪽이 소제기하고 나면 다른 쪽의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집행채권자·집행채무자중 한쪽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소를 제기하고 나면, 다른 쪽은 그 소송에 공동소송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여야 비로소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 전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후자는 상고심 계속 중 에도 가능하다. 한편 추심금청구의 기초가 된 추심명령이 무효이면, 그 추십재권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추심의 소를 각하해야 한다(대판 2016.11.10., 2014다54360)

▶ 추심명령의 경우와 달리,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는데 만약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전부된 그 채권을 청구하면 이 청구는 '기각'된다. .

교재 154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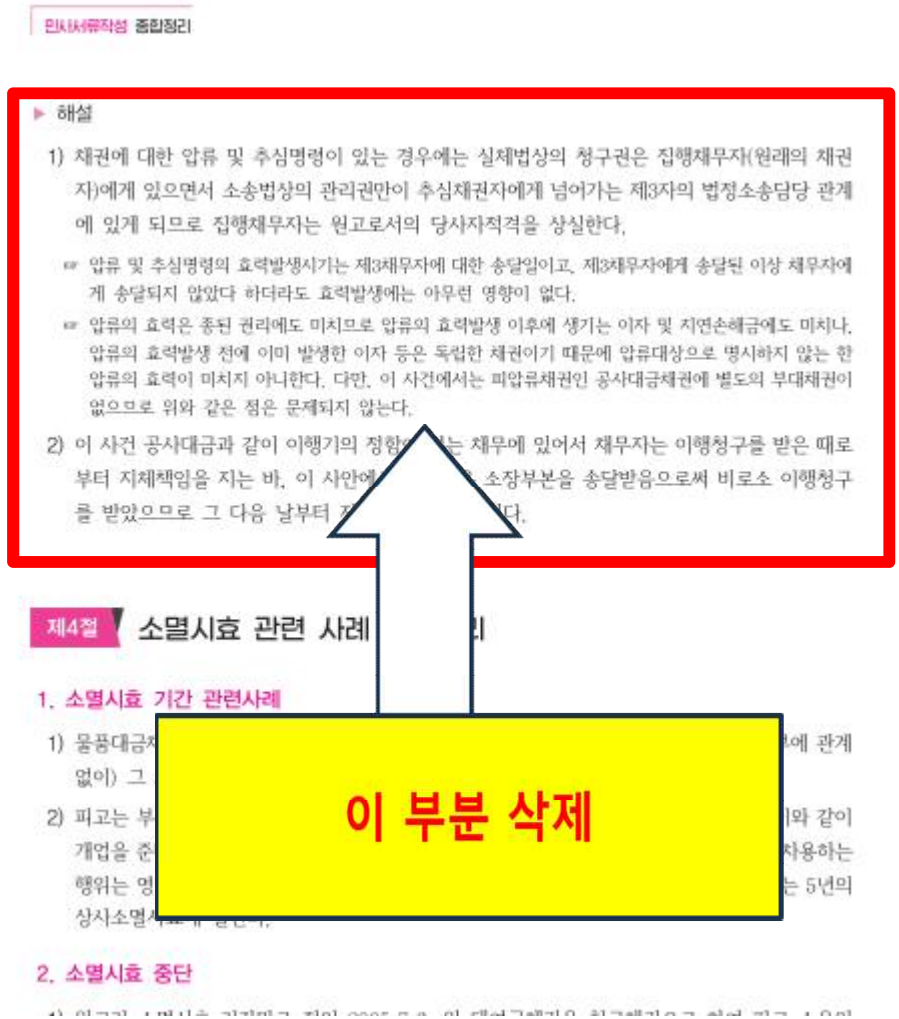
민사사례작성 종합정리
▶ 해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은 집행채무자(원래의 채권자)에게 있으면서 소송법상의 관리권만이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 관계에 있게 되므로 집행채무자는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이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이후에 생기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등은 독립한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에 별도의 부대채권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사대금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
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바, 이 사안에
를 받았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지
제4절 소멸시효 관련 사례
1. 소멸시효 기간 관련사례
1) 물품대금
없이) 그
2) 피고는 부
개업을 준
행위는 영
상시소멸
2. 소멸시효 중단
이 부분 삭제

교재 158 페이지

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홍덕수, 한기준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주채무인 위 물품대금채무와 함께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원고 임진희는 위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9.6.5. 홍덕수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홍덕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2009.10.9. 한기준에게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써 홍덕수 및 한기준에 대한 위 연대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에 아래 내용 추가

※ 참고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교재 175 페이지

라. 건물공유자를 상대로 한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각 공유자의 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4(또는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병, 정은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목록 2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각 같은 목록 (1)기재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목록 1..... 로 수정
(괄호표시 제거)

3. 동시이행 사례 등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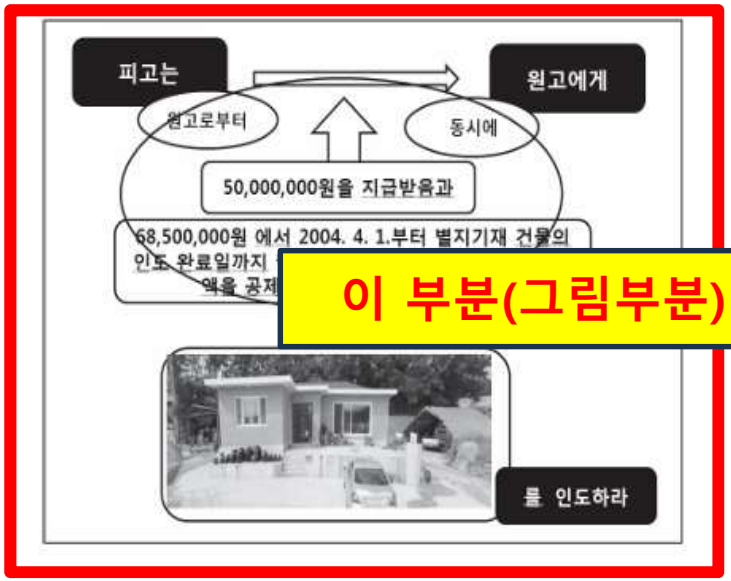

이 부분(그림부분) 삭제

1) 유형 : 인도소송(연체차임 등이 없거나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교재 176 페이지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1가 567 지상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3층 200㎡)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0,000,000원을..... 로 수정

Check Point

✣ **반대 입장에서의 금전청구**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쌍방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지연이자를 구하면 안 된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교재 177 페이지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유형 : 사법연수원 중요사례(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1. 피고 김동수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에서 2015.6.21.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150㎡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 1층 150㎡를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박준석은 별지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강영화는 별지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제2의 가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15.3.27.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비율로 계산한 ..... 으로 수정

5) 유형 : 철거대상 건물이 지분이전과 동시이행을 구하는 경우(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잔액과 동시이행을 철거를 구하는 경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5.1.1.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

교재 178 페이지

◈ 부적절한 기재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9,000,000원에서 2015.1.21.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명도완료 시까지 매월 금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하여 위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적절한 기재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9,000,000원에서 2015.1.21.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 시까지 월 금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삭제

교재 179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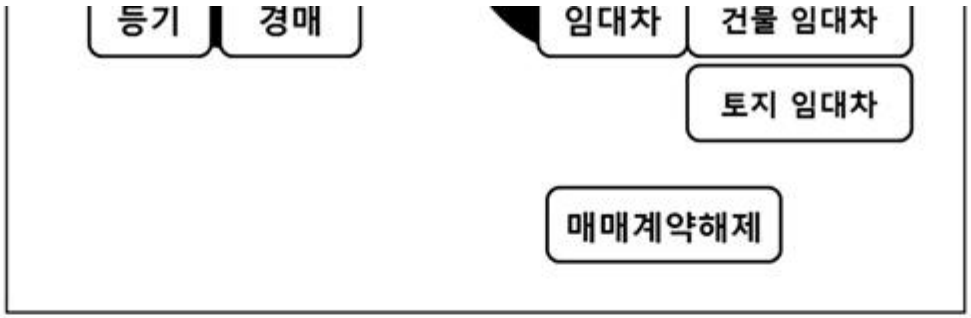

1. 소유권에 기한 인도 · 철거

가. 총설[1)]

이 부분 제목만 삭제

1) 인도청구의 경우

① 요건사실은 "원고의 목적물 소유 + 피고의 목적물 점유"이다.

② 원고의 목적물 소유인 사실은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경위가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인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또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③ 피고의 점유사실은 원고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직접점유사실을 말하므로, 제3자에게

교재 180 페이지

여는 대지의 인도 주문을 내지 않고 있다(대판 2003.11.13, 2002다57935).

나. 기본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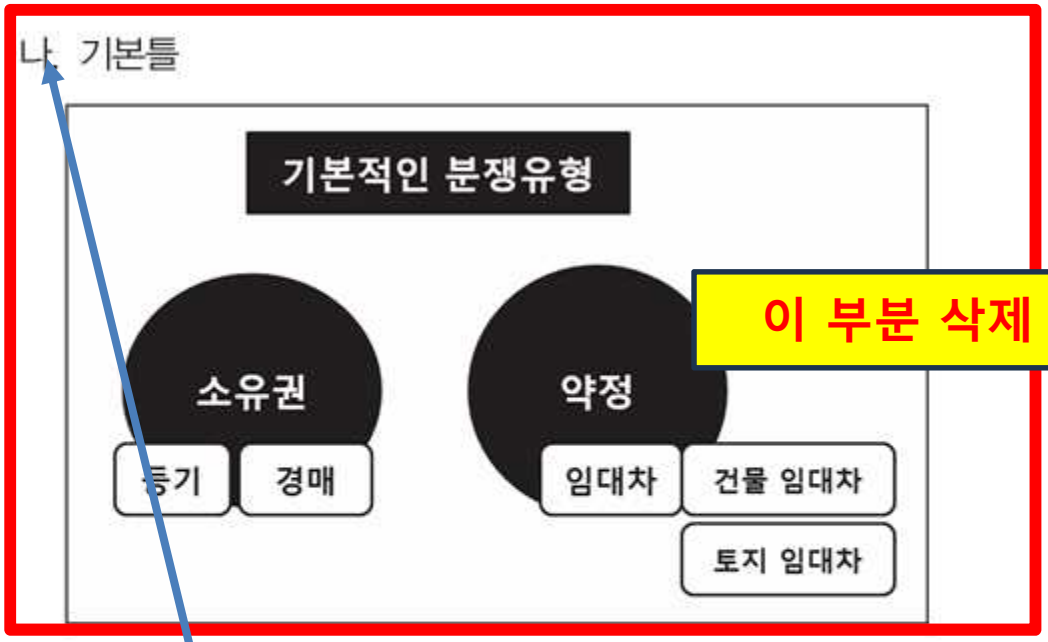

이 부분 삭제

다. 사례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경12825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 12.10.1.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2.10.20.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번호수정

교재 180 페이지

이 부분 삭제

를 점유하고 있는가에 관 유자에 대하
여는 대지의 인도 주문을 내지 않고 있다(3.11.13. 2002다57935).

나. 사례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경 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10.1. 매각허가결정 아 2012.10.20.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 박장비는 2010.3. 초순경 소외 엄대영과 당시 박장비 소유이던 위 토지 위에 1/2씩 건축비용을 분담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2010.8. 중순경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2.9.15. 엄대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1/2 지분을 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고, 김관우가 2010.9.1. 피고 박장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전부가 그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차임상당액은 월 3,060,000원입니다.
2. 그러므로 피고 박장비는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시취득자로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그 원시취득자인 엄대영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 여부에 상관없이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며, 피고 김관우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김관우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박장비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재 181 페이지

2) 토지임대차 사례

1. 원고는 2013.3.17. 피고 갑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대지를 임대보증금은 900만 원, 월 차임은 140만 원, 임대기간은 2015.3.16.까지로 하고, 기간 종료 시는 원상회복하여 반환받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 피고 갑은 위 대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며 피고 을에게 이를 전대하여 그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서도 2014.12.1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2015.3.16.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갑은 별지목록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하고 2014.12.17.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피고 을은 위 가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하여 ..... 로 수정

교재 184 페이지

므로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서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은 물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김관우는 의뢰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 사건 토지의 차임상당액은 월 3,060,000원 상당임으로 가정할 것.
조자룡의 위 진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고 모든 문제를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실제로 할 것을 가정하여 이를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작성하시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되 그 밖에 자연적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고 장황하게 기재하지 말며, 날인은 ㊞으로 표시하시오. 또한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첩부인지대 및 송달료를 기재하시오 (소가와 인지를 계산한 내역도 기재할 것).

▶ 별지 1항 기재 토지의 1㎡당 공시지가는 2,000,000원이고, 시가는 2,500,000원이다.

▶ 별지 2항 기재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50,000,000원이고, 매매시가는 100,000,000원이다.

(소장자성일은 2014. 9. 28.로 할 것)..... 추가

부동산의 표시

교재 204 페이지

주었고, 위 임대차약정 당시 피고 김수호는 임대차기간 동안 위 임대토지상에 100평 정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식당영업을 할 수 있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피고 김수호가 동인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여 위 토지를 박부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김수호는 위 대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을 지어 소유하면서 갈비구이집을 하고 있다.

◎ 그러나 김수호는 2017년 1월경부터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월 차임 일부씩을 지급하지 않더니, 이부호가 사망한 직후부터는 차임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다. 2017.1. 이래 2017.6.4. 현재까지 김수호가 낸 차임은 ① 2017.1.6. 130만 원, ② 2017.2.6. 160만 원, ③ 2017.3.6. 130만 원, ④ 2017.4.6. 50만 원, ⑤ 2017.5.6. 160만 원이 전부이다.

◎ 그리고 김수호가 축조한 건물에는 [illegible] 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춘천지방법원 20[illegible]

◎ 의뢰인들은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만료 이전에 김수호에게 임대해 준 토지를

이 부분 아래 내용으로 수정

그러나 김수호는 2017.1.6. 이후부터는 매월 6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그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17.1.6. 1,300,000원, 동년 2. 6. 1,600,000원, 동년 3. 6. 1,300,000원, 동년 4. 6. 500,000원, 동년 5. 6. 1,600,000원만 박부호에게 지급해 주었을 뿐입니다.

교재 212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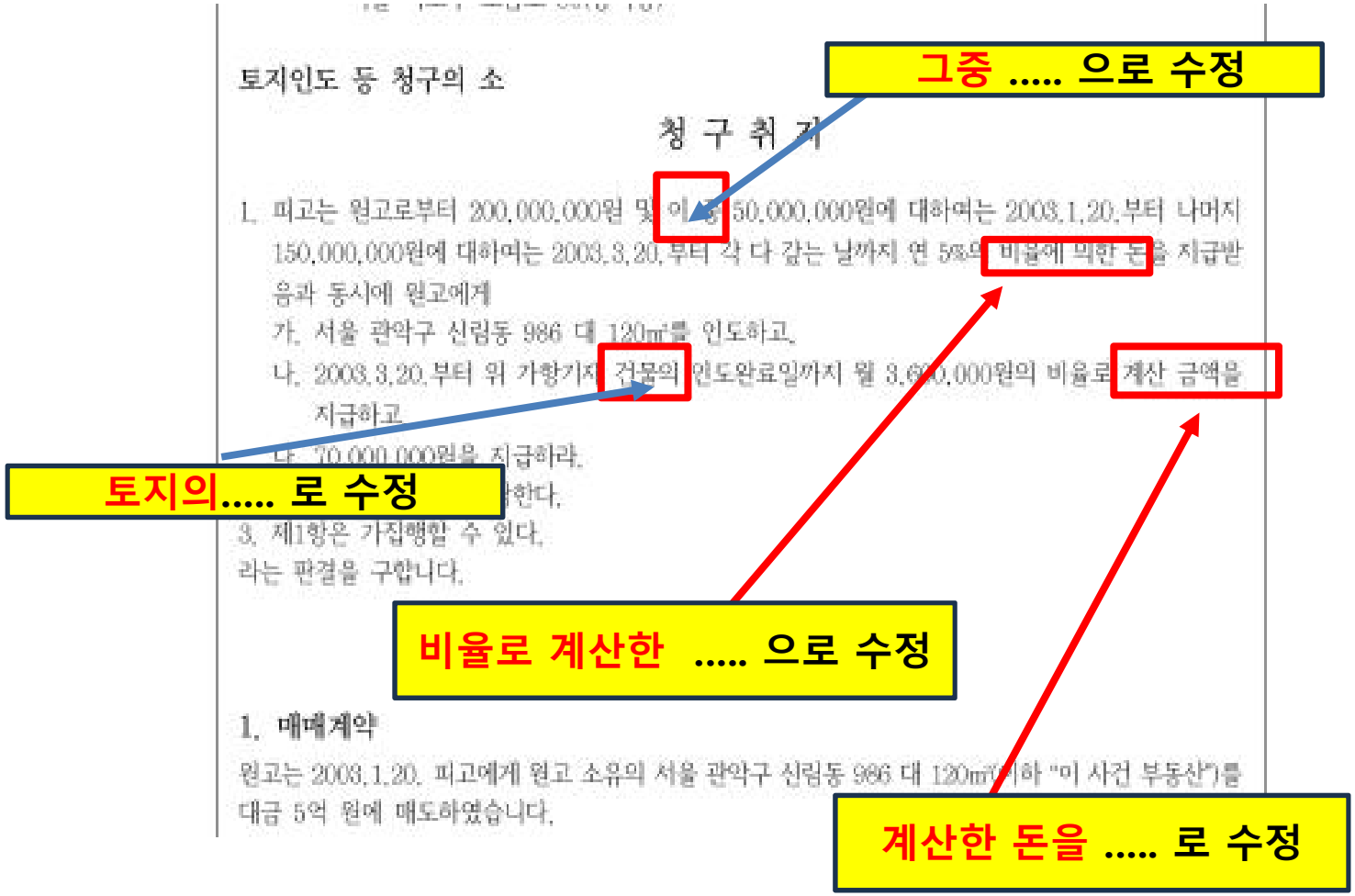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 및 이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1.20.부터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3.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6 대 120㎡를 인도하고,
나. 2003.3.20.부터 위 가항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 금액을 지급하고
다. 70,000,000원을 지급하라.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매매계약
원고는 2003.1.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6 대 120㎡(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대금 5억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중 ..... 으로 수정
토지의..... 로 수정
비율로 계산한 ..... 으로 수정
계산한 돈을 ..... 로 수정

교재 216 페이지

◎ 한편 심은진은 2013.3.1. 김윤아에게 삼성 마이젯 프린터 80대를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2013.4.30.까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이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위 물품을 모두 공급하여 주었는데, 아직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 원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김윤아의 보증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김윤아에게 도달된 상태이다(임차인 김윤아 입장에서의 청구취지 – 별지는 별지 기재 토지로만 표시).

삭제

▶ 답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전 중구 신화동 535 대 20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3,1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목록 기재 토지..... 로 수정

※ **해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기간만료일인 2014.1.31.이 변제기, 물품대금채권은 대금지급기일인 2013.4.30.이 변제기이므로 뒤에 도래한 2014.1.31.이 상계적상일 : 보증금 5,000 – 약정기간까지 차임연체 3개월 150 – 물품대금 3,000 – 물품대금 3,000에 대한 변제기 후 상계적상일까지 9개월간 월 2%(60만 원) 지연이자 540 = 1,310

교재 216 페이지

사표시가 도달된 상태이다(갑의 입장에서 주택의 인도청구 취지).

▶ 답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아래내용 추가

(임차보증금 30,000,000원 – 9개월간 연체차임 13,500,000원 – 대여금 잔액 2,000,000원0= 14,500,000원

교재 224-227 페이지

224 페이지

4 사례이하 .... 227 페이지 까지 내용 모두 식제

교재 244 페이지

chapter 01 총설

제1절 소장 작성례

이 부분에 아래 노란부분 내용 추가



소 장

원 고 김일남(580625-1234789)
서울 강남구 늘벗길 15, 115동 202호(대치동 554, 삼일아파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팩시밀리번호 :
전자우편주소 :
피 고 이민준(580514-1234567)
서울 강남구 도곡로 21번길 152, 205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소 가 165,000,000 원
330 x 1,000,000원 x 50/100
인지대 715,000 원
165,000,000원 x 40/10,000 + 55,000 원

교재 267 페이지

제6절 증명방법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소장에 붙여야 하고, 그 외에도 소장에는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2항).

등기사항증명서를..... 로 수정

제7절 첨부서면

1.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필요한 서류

청구취지와 원인만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소송의 소장에는 그 산출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인지규칙 제8조 제2항).

교재 270 페이지

◎ 마침 저는 남편이 공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수중에 약간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었고,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하여 기회가 되면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텃밭을 일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임주경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나서 남편과 상의를 하였더니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아서 며칠 후인 2016년 5월 12일 임주경을 만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1번지의 2호 토지를 3억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저는 그날 계약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임주경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1억 원은 2개월 후인 2016년 7월 12일에 잔금 1억 7,000만 원은 4개월 후인 2016년 9월 12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작성한 문서가 매매계약서입니다.

대 1,000㎡를 ..... 로 수정

◎ 그 후 저는 2016년 7[illegible]이 생겨 2016년 9월 12일 잔금지급기일에 [illegible] 2016년 10월 11일 잔금이 마련되어 임주경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임주경은 제가 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약되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 후 저는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주경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임주경은 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2016년 10월 15일 임주경을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1억 7,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 한편 임주경은 2016년 6월 하순경 저를 찾아와 "청담동 커피전문점 개점에 필요한 자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 그러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2억 원만 빌려 달라. 이자도 은행이자보다

교재 271 페이지

◎ 제가 보기에 임주경은 인근의 땅값이 오르자 잔금 지급이 며칠 늦어진 것을 핑계로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1번지의 2호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는 1억 원이며 시가는 1억 5,000만 원에 이름

의뢰인은 임주경에게 양평 땅의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임주경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고 임주경 부부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기를 원함.

의뢰인을 위하여 유리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시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

밖에 자연적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고 장황하게 기재하지 말며, 날인은 ㊞으로 표시하시오. 또한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첩부인지대 및 송달료를 기재하시오(소가와 인지를 계산한 내역도 기재할 것).

1㎡당 100,000원이며 시가는 3억 원에 이름 ..... 으로 수정

〈 유의사항 〉

1. 전희정의 위 진술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2018.9.15.자로 전희정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법하며 승소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시오.

교재 271 페이지

» 답안례

소 장

*** 소가 250,000,000원

내역) 1) 금전청구 200,000,000원

2) 이전등기 청구 50,000,000원

= 100,000,000원×50/100

*** 인지대 1,055,000원

250,000,000원×40/10,000 + 55,000원

1,000㎡ x 100,000원 ..... 으로 수정

교재 272 페이지

피고들의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5(잠원동)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임주경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1-2 대 1332㎡에 관하여 2016.5.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인도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000㎡ ..... 로 수정

청 구 원 인

교재 274 페이지

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인 0000.0.0.까지 매수인에게 그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0000.0.0.까지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매도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대법원 2010.7.22, 2010다1456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 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illegible]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illegible]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1994. 9.9, 94다8600, 대판 2007.12.27, 2007[illegible] 등 참조).

2. 사례 – 사법연수원 39기 2008년 변호[illegible] 자료 중 일부

다음은 이주홍[서울특별시 송파[illegible]호 : 02-577-6972]이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소장 [illegible]

〈 다음 〉

◎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신라가구"라는 상호하에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외국가

이 부분 삭제

교재 275 페이지

◎ 임정호가 자신의 동서인 전영구[541208-1043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391(역삼동)] 소유 부동산 중 창고부지로 적합한 곳이 있는 것 같다고 하므로, 의뢰인은 전영구에게 의사를 타진하였고, 여러 차례의 절충 끝에 2004.12.20. 전영구와 전영구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8 대지 1,850제곱미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시 의뢰인은 전영구와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8,000만 원은 2005.1.10.에 잔금 1억 원은 2005.2.1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전영구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와 별도로 중도금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의뢰 [redacted] 자 : 0000.0.0, 변제기 : 0000.0.0.)을 전영구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맹석윤도 참석하였으며, 맹석윤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채권양도에 승낙하였음). 그러면서 의뢰인과 위 전영구는 의뢰인이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연체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월 2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

1,000 제곱미터..... 로 수정

◎ 의뢰인은 조진기에게서 2004.12.24. 받기로 되어 있던 가구대금을 받아 전영구에게 위 토지매매대금 중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조진기가 위 가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다

교재 275 페이지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8 대지 1,850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넘겨오고 싶다고 함(다만, 현재 위 토지는 사실상 의뢰인이 관리하고 있음).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요건사
밖에 자연적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고 장황하게 기재하지 말며, 날인은 ㉓으로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첩부인지대 및 송달료를 기재하시오(소가와 인지를 계산한 내역도 기재할 것).
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8 대지 1,850제곱미터의 공시지가는 1억 원이며 시가는 1억 5,000만 원에 이름.

1,000 제곱미터에..... 로 수정

1,000 제곱미터의 공시지가는 1㎡당 100,000 원이며 시가는 2억 원에 이름(소장작성일은 2008. 1. 4.로 할 것). ..... 으로 수정

교재 276 페이지

소 장

*** 소 가 50,000,000원
(100,000,000원×50/100)
*** 인지대 230,000원
내역) 50,000,000원×45/10,000 + 5,000원

1,000㎡ x 100,000원 x 50/100 ..... 으로 수정

원 고 이주홍(490823-1082516)
서울 송파구 오금로 80(송파동)
(전화번호 : 02-577-6972)
피 고 전영구(541208-1043228)
서울 강남구 도곡로 391(역삼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8 대 1,850㎡에 관하여 2004.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000㎡ ..... 로 수정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4.12.20.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8 대 1,850㎡(이하 "이 사건 토지" : 갑 제2호증)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80,000,000원은 2005.1.10.에 잔금 100,000,000원은 2005.2.1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각 지급하되, 중도금 중 50,000,000원은 원고의 소외 맹석윤에 대한 원리금채권

교재 277 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참고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반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는 선이행의무이다. 그런데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판 1998.3.13, 97다54604·54611).

이 부분에 아래 노란부분　내용 추가

▶ 현재 토지는 사실상 의뢰인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전등기만 청구하고 이에 대한 인도청구는 하지 않았음.

교재 278 페이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중도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중도금지급기일 다음 날인 2005.1.11.부터 잔금지급기일인 2005.2.10.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30,000,000원×0.02×1월)과 잔금 100,000,000원을 합한 130,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사례

갑은 2002.5.28. 을로부터 AAA 부동산을 금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7,000만 원은 2002.6.20. 잔금 2억 원은 2002.7.20에 각 지급하되, 중도금의 지급지체 시에는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잔금은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갑은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중도금지급기일에는 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소장의 청구취지

▶ 답안

피고는 원고로부터 25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3 대 129㎡에 관하여 2002.5.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중도금 중 미지급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illegible]터 잔금지급기일인 2002.7.20.까지의 지연손해금 100만 원, 잔금 2억 원의 합계금 251,000,000[illegible]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을(피고)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illegible]을 하지 않았으므로 잔금지급기일 이후의 이행지체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 삭제

교재 281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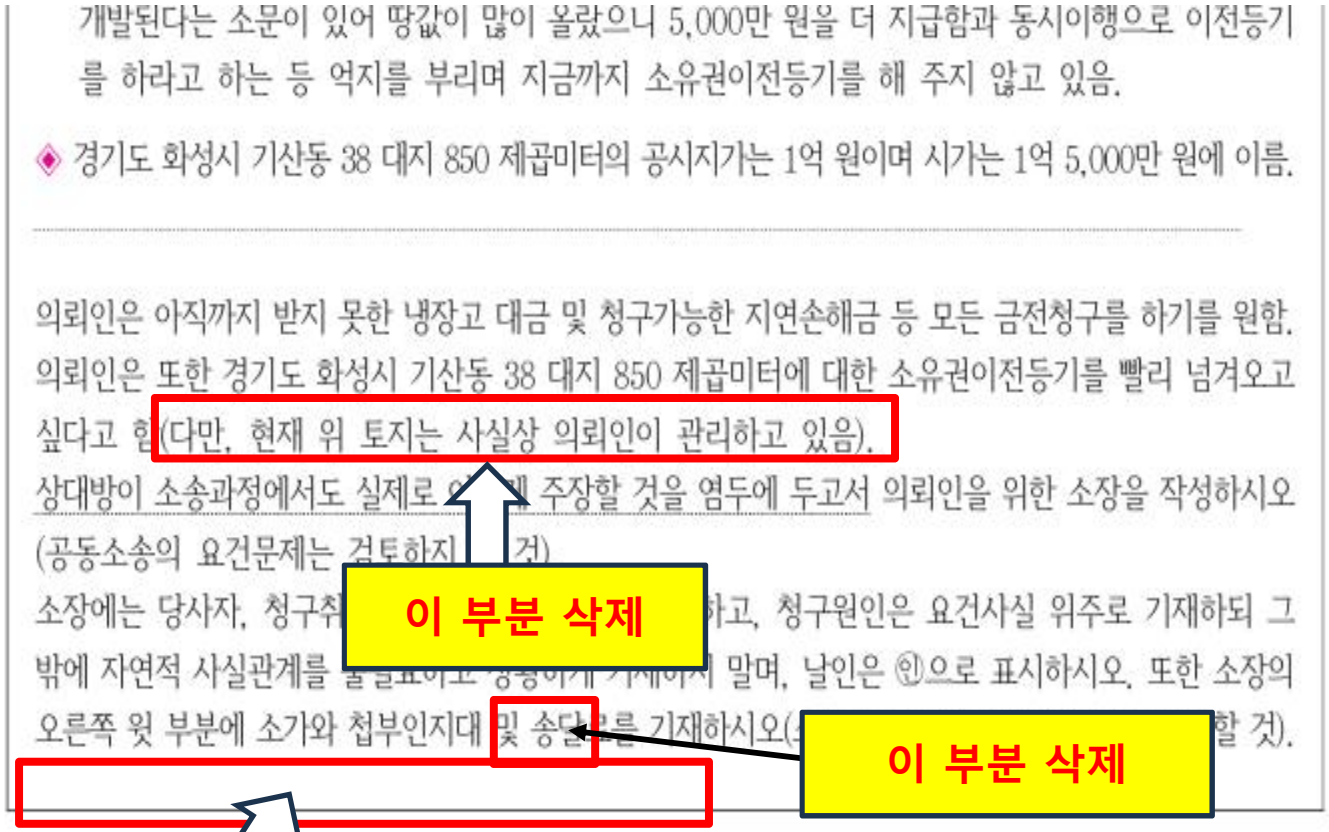

이 부분에 아래 노란부분 내용 추가

(소장작성일은 2014. 9. 27.로 할 것

교재302 페이지

원 고 1. 이병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22, 102호(서초동)
(전화번호 :)
2. 이만식
서울 서초구 서래로3길 13(반포동)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갑순
(전화번호 :)

피 고 1. 정병철
서울
2. 김형

이 부분에 아래 노란부분으로 수정

원 고 1. 이병희 (1982. 5. 24.생 - 오래전 시험자료이고 불문명해서 편의상 주어진대로만 기재하였음)
성남시 단대동 35번지
(전화번호 :)
2. 이만식 (1990. 1. 6.생- 오래전 시험자료이고 불문명해서 편의상 주어진대로만 기재하였음)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갑순
(전화번호 :)

교재30 5-307 페이지 문제

305 페이지, 306 페이지,
307 페이지 모두 삭제

교재308 폐이지

【문】 이 밖에 송동훈의 유죄판결문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소장을 작성하시오.

» 답안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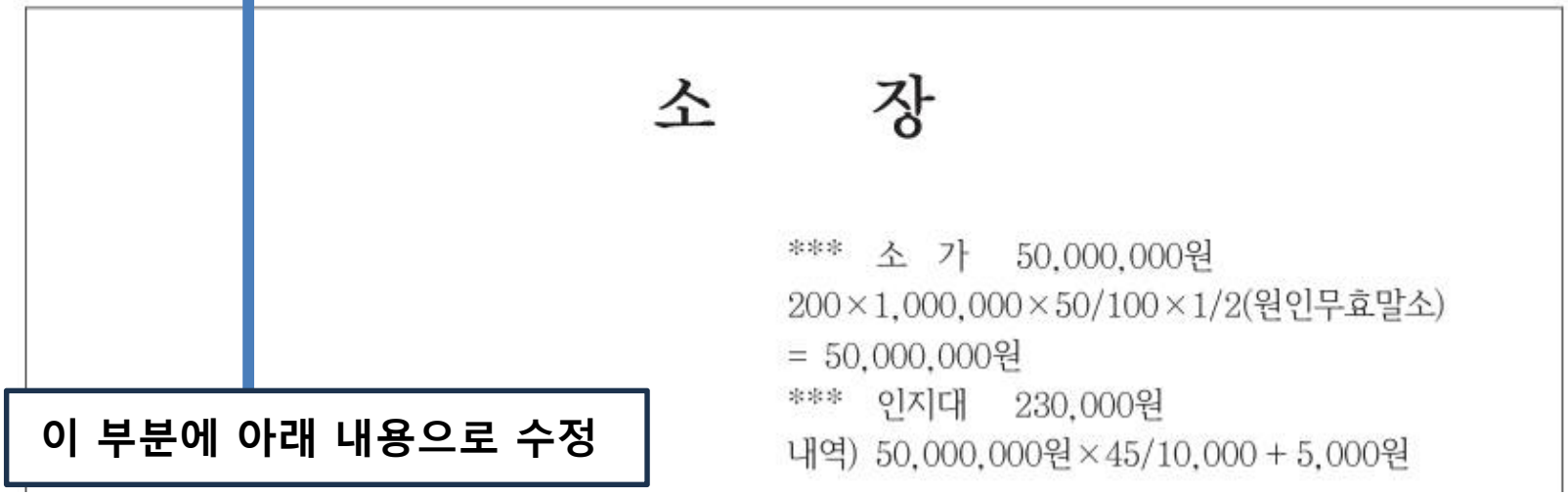

소 장

*** 소 가 50,000,000원
200×1,000,000×50/100×1/2(원인무효말소)
= 50,000,000원
*** 인지대 230,000원
내역) 50,000,000원×45/10,000 + 5,000원

이 부분에 아래 내용으로 수정

7. 사례 - 2013년 사법연수원 44기 1학기 민사재판실무 문제로서 시험시간에 작성하기에는 그 양이 많은 편이므로 그 내용을 참고만 할 것을 권함

교재318-319 문제

318 페이지, 319 페이지,
320 페이지 모두 삭제

교재 321 페이지

» 답안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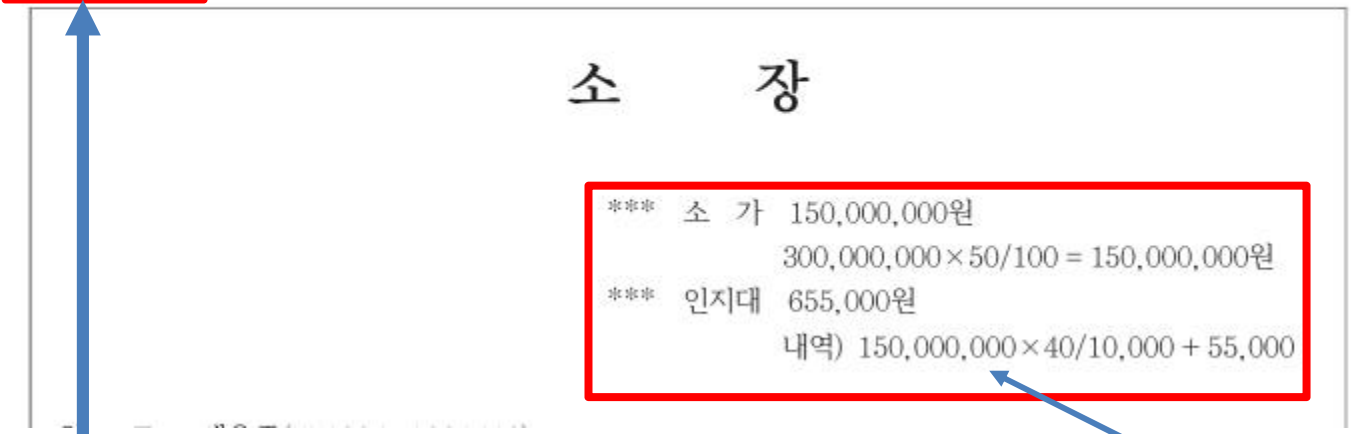

소 장

*** 소 가 150,000,000원
300,000,000×50/100 = 150,000,000원
*** 인지대 655,000원
내역) 150,000,000×40/10,000 + 55,000

이 부분에 아래 내용으로 수정

*** 소가 및 인지계산은 생략....
으로 수정

9. 사례 - 사법연수원 34기, 38기, 39기 민사재판실무 문제로서 시험시간에 작성하기에는 그 양이 많은 편이므로 그 내용을 참고만 할 것을 권함

교재 327 페이지

이 부분 삭제

참고사항

- 건물철거 외에 건물보존등기 말소는 구하는 것이 아님(건물은 피고 장동근 소유의 것이고 그에 대한 장동근의 보존등기 자체는 말소사유가 없음 – 건물철거 승소 후 건물을 철거한 후 후일 멸실등기하게 될 것임). 가압류권자인 최철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가에 대하여만 구함.
- 최지실은 임대차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점유보조자이므로 피고로 하지 않음.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이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것에 그칠 뿐 채무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가압류는 그 효력으로 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은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 관련**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1다13380). – 위 사안의 실제 사례에서는, 원고가 해제의사표시하기 이전에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내용에 대한 판결례까지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한 판결이유를 옮기면, "위 변제공탁 당시 피고 장동근이 원고에게 잔금채무의 변제제공을

교재 335페이지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노애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5.2.25. 접수 제13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정부동은 같은 등기소 2007.3.30. 접수 제27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노애정은 원고에게 금 580,000,000원 및 그중 2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3.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4.1.부터 2007.8.7.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부분 삭제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 노애정의 관계

가. 소외 김강산은 전처인 이순정과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2남 3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이순정이

교재 339 페이지

참고사항

- 김강산의 공동상속인들로는 장남 김일기 외에도 차남과 딸 셋이 더 있으나, 장남 김일기가 김강산의 전재산을 포괄유증받았고, 포괄수증인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078조) 결국 김일기가 김강산의 전재산을 단독 상속한 것이 되어 차남과 딸들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없다.
- 김강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노애정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증여가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증여여야만 한다. 즉, 부담부증여에 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 노애정이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고 노애정 앞으로 이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버렸기

이 부분 삭제

교재 340 페이지

이 부분 삭제

때문에,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제556조 제1항 제2호(수증인이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제)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민법 제558조 참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부담은 매매에서와 같은 대가성 있는 급부가 아니라 일종의 부관으로서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인해 수증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부담이 있다고 하여도 부담부증여는 여전히 무상·편무계약일 뿐 유상·쌍무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담이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것과 유사하므로 민법도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준용)토록 한 것이다. 부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양의무도 무방하다.

- 부담부증여계약을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이행의 최고가 필요한지 문제가 된다. 그 부담에 관하여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544조 본문에 의하여 이행의 최고를 요하나, 제544조 단서, 제545조, 제546조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가 필요 없다. 이 사건에 있어 부담인 피고 노애정의 부양의무는 그 성질상 민법 제545조의 정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나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대법원 69다1369 판결, 95다43358 판결의 사안에서는 최고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이행의 최고 없이 이루어진 해제를 적법하게 하기 위한 근거로서 민법 제544조 단서, 제545조, 제546조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법조문을 기재하였다. 만약 원고가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6.3.23.자 해제통지서가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행의 최고를 할 경우에는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피고 정부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그 해제 전에 이루어진 결과가 되어 원고는 원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 채권행위에 이어 물권행위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채권행위가 해제되는 경우,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유인설을 취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제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환원이 없어도 소유권은 해제와 동시에 해제자에게 복귀한다. 이 사건에서는 해제의 효력발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김강산이었으므로 그 복귀자를 원고로 쓰면 안 된다.
- 위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계약 당사자는 각기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민법 제548조 제1항).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해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자여야 한다(대판 2002.9.27, 2001다5972, 대판 2002.10.11, 2002다33502, 대판 2003.1.24, 2000다22850, 대판 2005.1.14,

교재342-344 페이지 문제

342 페이지, 343 페이지,
344 페이지 모두 삭제

교재344 페이지

» 답안례

소 장

*** 소 가 252,200,000원(50,000,000원 + 202,200,000원)
내역) 1. 근저당 말소
토지 100×1,000,000원×50/100 = 50,000,000원
건물 1억 원×50/100 = 50,000,000원
2. 매매대금 청구
202,200,000원
* 인지대 1,063,800원
내역) 252,200,000원×40/10,000원 + 55,000원

원 고 손은미(580301 – 1230038)

이 부분에 아래 내용으로 수정

11. 사례 - 사법연수원 자료로서 시험시간에 작성하기에는 그 양이 많은 편이므로 그 내용을 참고만 할 것을 권함

교재 424 페이지

제1절 중요사항 심화정리

1. 사해행위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하는 경우

통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가 병합된 상태로 제기되는데, 만일 취 청구한 경우,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아니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청구기각설).

이 부분 삭제

2. 소송요건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을 의미하는 바,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구한다(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피보전채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

번호수정

교재 428 페이지

이 부분 삭제

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예외적으로, ⓐ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련의 사정을 입증하여도 무방하다.

4)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채권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행사의 효과는 전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로 인하여 해를 입을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물상담보권이 있는 경우

ⅰ)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ⅱ) 해당 채무액이 담보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 한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에는 물상담보가 없고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며, 따라서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2006.4.13, 2005다70090).

교재 429 페이지

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③ 그리고 사해행위의 성 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 산정시기는 사해

이 부분 삭제

④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번호수정

2)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 바,

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

교재 432 페이지

6. 원상회복

1) 원물반환의 원칙

가) 원물반환의 원칙

①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인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명의로 이전된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대신에 채무자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가능).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의 채무자에의 양도와 그 양도 통지 [illegible] 것이다.

이 부분 삭제

②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서의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하고, 가등기 후 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되었다는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사해행위 당시에 어느 부동산의 가액보다 이다

교재434 페이지

이 부분 삭제

나)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은 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③ 수익자·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병합하여 청구되는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실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범위에 앞서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사해행위 취소범위와 가액배상의 범위를 동일한 기준하에 한꺼번에 판단함으로써 사해행위 취소범위와 가액배상의 범위를 일치시키고 있다.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와 동일하다. 피보전채권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공제되어야 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까지의 발생분은 포함되어야 한다.

Ⓑ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 즉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등기의 현실적인 말소 여부는 묻지 않는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지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망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에서 대위변제된 금원을 또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5.10.14, 2003다60891).

교재435 페이지

435 페이지
모두 삭제

교재 436 페이지

이 부분 삭제



▶ 대법원 2003다40286 판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 기타

유류를 공급받고 그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위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수익자 · 전득자의 이익

수익자 · 전득자는 자신들이 받은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전득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면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받은 이익이 일치하게 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라면 피담보채권액이 이익의 가액이 된다.

③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해당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7. 취소 및 원상회복의 부수적 문제

1)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교재 446-454 페이지

446-454 페이지
모두 삭제

교재 455 페이지

chapter 02 소작작성 실무 정리

제1절 소장 작성례

01...로 수정

소 장

*** 소가 70,000,000원(대위 청구하는 건물인도가액은 양수금 청구의 수단청구이므로 소가에 산입하지 않음)

*** 인지대 320,000원
내역) 70,000,000원×45/10,000 + 5,000원

원 고 최명수(690201-1898098)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8, 109동 807호(반포동, 한양아파트)
전화번호 : 010-1234-5678
전자우편 : cms@hanmail.com

피 고 1. 주진무(681212-1298654)

교재463 페이지

chapter 03 소장작성 연습

02...로 수정

1. 사례 – 2004년(제10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이기재[(681218-201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8, 109동 807호(반포동, 한양아파트), 전화번호 : 678-4342, 전자우편 : kgu@gdskk.com)]가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소장 작성을 의뢰하며 진술한 내용이다.

"저는 한시명과 결혼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슬하에 자식을 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한시명은 2004.1.15. 23:00경 차행진[(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로대로 155(잠원동), 전화번호 : 1234-9876, 주민등록번호 : 711215-1357924)]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

교재 476 페이지

3. 토지대장등본	1통
4. 건축물대장	1통
5. 송달료납부서	1통
6.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
7. 소장부본	4통

2017. 9. 16.

원고 김갑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9. 15.....로 수정

4. 사례 – 2009년(제15회) 법무사 지점 기출문제

교재478 페이지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이하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5.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정무갑은 피고 이하유에게 서울 서초구 원지동 246 전 77㎡에 관하여 2008.8.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중.....으로 수정